

##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, 당사와 국도첨단소재(주)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 년 7 월 31 일

2024 년 07 월 16 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2로 61(가산동)

국도화학주식회사

대표이사 이 시 창